

보도일시	2021. 8. 5.(목) 배포 즉시 / 총 2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	과 장 오영민 사무관 하치욱	044-202-7526 044-202-797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고용노동부,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으로 고시 -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(인상률 5.05%) -

-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,160원(인상률 5.05%, 증 440원)으로 8월 5일(목) 고시하였다.
 -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914,440원이며,
 -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.
-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,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(7회), 현장방문(4회)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·의결하였고,

- △ (월 환산액 병기) 6.22. '시간급, 월환산액 병기' 의결(만장일치)
- △ (업종별 구분) 6.29. 찬성 11표, 반대 15표, 기권 1표로 부결(단일 최저임금 적용)
- △ (최저임금 수준) 7.12. 찬성 13표, 반대 0표, 기권 10표로 '시간급 9,160원' 가결

- 고용노동부는 7.19. '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'을 고시한 이후 7.29. 까지 이의 제기 기간*을 운영하였으며,

* (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)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-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, 경영계(한국경영자총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소상공인연합회)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·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·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.

□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·안내와 함께

- 사업장에 대한 교육·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□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,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”라고 하면서,

- 앞으로 “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하치욱 사무관(☎044-202-797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